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05

발의연월일: 2020. 7. 2.

발 의 자:권명호·서일준·이주환

송언석 • 이만희 • 김형동

윤재갑 • 이종성 • 강기윤

구자근 • 이달곤 • 윤영석

정점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기변동 및 산업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나 지역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나 고용재난지역 등으로 선포될 경우, 현행법은 해당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음.

그러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이나 고용재난지역 선포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사업주는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주들이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거나 사업장이 고용재난지 역 등에 위치하여 보험료 납부유예가 허용된 경우에는 연장된 보험료 납부기한이 만료되더라도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 련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의3).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명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3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보험료와 이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 1. 사업장 소재지역 또는 사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지역별 지 원대상
 -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 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 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 역
- 2. 제39조에 따라 연장된 납부기한이 만료될 것

3.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부
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			
부) ① (생 략)			부) ①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			
			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보험			
			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			
			수금의 분할 납부를 승인하여			
			줄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u>할 수 있다.</u>			
			1. 사업장 소재지역 또는 사업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			
			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			
			지역별 지원대상			
			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3			
			2조제3항에 따른 고용위기			
			<u>지역</u>			
			다. 「고용정책 기본법」 제3			
			2조의2에 따른 고용재난지			
			<u>역</u>			
			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위기대			
			응특별지역			

3	건강보	보험공	단은	제1	항에	叫
라	신청형	한 사임	철주여	에 대	하여	납
부득	등력을	확업	인하 ⁽	여 5	브험료	와
0	법에	따른	ユ	밖의	징수	-금
의	분할	납부	를 선	능인할	수	있
다.						

- ④ (생 략)
- ⑤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 분할 납부의 기간 및 납부능력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제39조에 따라 연장된 납부
기한이 만료될 것
3.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
<u>상일 것</u>
③제1항 및
<u>제2항</u>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u>정</u>